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11
----------	------

제출일자 : 2026. 5. 25.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손해배상 시 지자체장의 면책 특례 규정은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혼선 우려가 있고, 사용료 미반환 원칙 또한 이용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이에 「민법」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중복과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현행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관련 별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자치법규에서 지자체장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함.(안 제14조)
- 나. 종전 사용료 반환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규정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비함으로써, 사용료 반환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다. 현행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실태 변화 등을 반영하여 관련 별표를 정비함.
(안 별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민법」 제750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26. 1. 29. ~ 2. 19.)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6-3”을 “8”로 한다.

제12조제2항제9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받은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3조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2】

1. 시설사용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헬스장	1인/1월	15,000	30,000	
강당	오전	20,000	40,000	마이크 2개 무료 제공
	오후	25,000	50,000	
	야간	30,000	60,000	
체육관	오전	30,000	60,000	마이크 1개 무료 제공
	오후	50,000	100,000	
	야간	70,000	140,000	
야외공연장	오전	35,000	50,000	
	오후	50,000	70,000	
	야간	70,000	100,000	
강의실	오전	15,000	25,000	
	오후	17,000	27,000	
	야간	20,000	30,000	

2. 강습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평생교육강좌	월/1과목	80,000원 이하	재료비 등 강습에 필요한 실비 별도

3. 부속설비 사용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빔프로젝트	1회	15,000	30,000	

강당 무빙라이트 조명	1회	20,000	30,000	
냉·난방	강당 1회	40,000	80,000	
	체육관 1회	40,000	80,000	
	강의실 1회	15,000	30,000	
노트북	1회	15,000	30,000	
음향(추가마이크)	1개당	5,000	10,000	

※ 위 1회는 제1호(시설사용료)의 각 기준에 따른 기간 내 시설을 사용하면서 부속설비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시간 구분

구 분	시 간	비 고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토요일은 운영 안함

※ 허가된 이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다음 회 이용료 전액을 가산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수련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청소년 문화의 집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220길 6-3 (호 신설 2012.7.10.)</p> <p>②·③ (생 략)</p> <p>제12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생 략)</p> <p>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8. (생 략)</p> <p>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p> <p>③ (생 략)</p> <p>제1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받은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p> <p>1. 제10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에는 전액 반</p>	<p>제3조(위치 및 시설)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8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받은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반환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p>

환

2.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청인이

취소원 제출시에는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신청인이

취소원 제출시에는 반액반환

제14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사용자
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용자 손
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생략)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
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
본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대구광
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손해배상)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준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2 현행

별표2 개정안

[별표2]

[별표2]

1. 시설사용료

1. 시설사용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헬스장	1인/1월	15,000	30,000	
강당	오전	20,000	40,000	마이크 2개 무료 제공
	오후	25,000	50,000	
	야간	30,000	60,000	
체육관	오전	30,000	60,000	
	오후	50,000	100,000	
	야간	70,000	140,000	
인공암벽장	1인/1월	20,000	30,000	1일 2시간
	1인/1일	3,000	6,000	2시간
야외공연장	오전	35,000	50,000	
	오후	50,000	70,000	
	야간	70,000	100,000	
음악연습실	2시간	10,000	20,000	
강의실	오전	15,000	25,000	
	오후	17,000	27,000	
	야간	20,000	30,000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헬스장	1인/1월	15,000	30,000	
강당	오전	20,000	40,000	마이크 2개 무료 제공
	오후	25,000	50,000	
	야간	30,000	60,000	
체육관	오전	30,000	60,000	마이크 1개 무료 제공
	오후	50,000	100,000	
	야간	70,000	140,000	
<u><삭제></u>				
야외공연장	오전	35,000	50,000	
	오후	50,000	70,000	
	야간	70,000	100,000	
<u><삭제></u>				
강의실	오전	15,000	25,000	
	오후	17,000	27,000	
	야간	20,000	30,000	

3.부속설비 사용료

3.부속설비 사용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빔프로젝트	1회	15,000	30,000	
조명(무빙)	1회	20,000	30,000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빔프로젝트	1회	15,000	30,000	
<u>강당</u>	1회	20,000	30,000	

라이트)				
냉·난방	강당 1회	40,000	80,000	
	강의실 1회	15,000	30,000	
노트북	1회	15,000	30,000	
음향(추가 마이크)	1개당	5,000	10,000	

<u>무빙라이</u> <u>트 조명</u>				
냉·난방	강당 1회	40,000	80,000	
	<u>체육관</u> <u>1회</u>	<u>40,000</u>	<u>80,000</u>	
	강의실 1회	15,000	30,000	
노트북	1회	15,000	30,000	
음향(추가 마이크)	1개당	5,000	10,000	

관 계 법 령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